

## 5. 통상실시권 확인

### ☐ 통상실시권확인

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품종보호권(이하 ‘이 사건 품종보호권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
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‘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’고 규정하고 있는바,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 출원 당시 그 대상인 보호품종을 선의로 사실상 지배하여 실시하고 있던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의 이해를 공평의 견지에서 조정하기 위한 법정실시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,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그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품종보호를 출원한 육성자로부터 그 보호품종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(광주고등법원 2014.10.30. 선고 2014나449 판결)